

울산지방법원 2023. 8. 7 선고 2022가단1286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기영

변 론 종 결 2023. 6. 26.

판 결 선 고 2023. 8. 7.

주 문

1.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22. 2. 25. 접수 제2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C은행,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그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보증계약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순번	대출은행	보증계약체결일	보증금액(원)
1	C은행	2017. 6. 16.	99,000,000
2	기업은행	2019. 6. 4.	297,000,000

나. 1) 그런데 B은 이자를 연체하는 등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원고는 2022. 8. 19. 기업은행에 원금 296,969,787원, 이자 4,282,290원, 합계 301,252,07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22. 10. 27. C은행에 원금 99,000,000원, 이자 2,773,168원, 합계 101,773,1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B은 원고와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B은 원고에게 미수위약금, 법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미수위약금은 973,180원이고, 법절차비용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746,185원이다.

다. 1) 한편, 피고는 2018. 12. 19. B에 토지 매수대금으로 35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B이 피고에게 위 변제기까지의 이자로 3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B이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21. 5. 3. B과, 차용금

35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를 2022. 5. 21.까지로 연장하고, 기존 이자 30,000,000원은 유지하되, B이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22. 5. 21.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B은 2022. 2.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22. 2. 25. 접수 제2066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매매계약을'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B의 C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B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원고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위 각 증거에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7. 6. 16. 및 2019. 6. 4. 각 체결된 점,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21. 8. 26. 채권자를 D 주식회사로 하여 청구금액 841,610,000원인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고, 2021. 11. 29. 채권자를 김영현으로 하여 청구금액 50,000,000원인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에는 B의 자력에 문제가 생겼던 점, ○ B은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99,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22. 3. 20.경부터 이자를 연체하는 등의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실제 원고는 그로부터 약 4개월 내지 6개월 후에 C은행, 기업은행에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B은 당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약 6개월 내지 8개월이 지난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B의 무자력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다가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산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E기관, F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2. 2. 24.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옳다.

○ 적극재산 합계 900,000,000원

· 경남 하동군 G리(이하 'G리'라고만 한다) H 지상 건물 I호: 450,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450,000,000원

○ 소극재산 합계 2,141,266,703원

- J은행에 대한 운전자금, 신용카드 채무: 81,000,000원
- 기업은행에 대한 운전자금, 기업구매전용카드 채무: 389,000,000원
- C은행에 대한 운전자금 채무: 110,000,000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신용대출 채무: 174,000,000원
- F조합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채무: 580,000,000원
-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639,000,000원¹⁾ · D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68,266,703원²⁾

라. 사해행위 여부 및 B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또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살펴본 여러 사실관계에 의하여 드러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H 지상 건물 I호 밖에는 없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B이 보유한 적극재산의 1/2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점, ○ 당초 피고는 B에 토지 매수대금 3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B이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대물변제조로 피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이 B이 사실상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이상 이는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가 아닌 점,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앞서 본 바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1,240,000,000원 이상 많은 상태였다)에 있었는데, 그런데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사실상 대물변제함으로 인하여 그 무자력 상태가 매우 심화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당시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 일부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가압류를 하여 두는 등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의 사해의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신용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초 피고는 B에 변제기를 2019. 1. 21.로 정하여 3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기까지 그 원금 내지 이자의 일부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B의 자력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 위와 같이 당초 예정한 변제기까지 B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다시 변제기를 2022. 5. 21.까지로 유예하였는데, 만일 피고가 B의 자력(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그 변제기까지 기다렸다가 B이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그 변제기로부터 약 3개월 이전인 2022. 2. 24.에 B로부터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조로 매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소결론

이와 같이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바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상민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남 하동군 []

[도로명 주소] 경남 하동군 []

일반철골구조 판별지붕 단층 제 2종 근린생활시설 115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일반철골구조

면 적: []호 164.9㎡

대지권의 표시

토지권의 표시: 경남 하동군 [] 대 4623㎡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4623분의 662.0283

---- 이 상 ---

1) 피고의 2022. 12. 23.자 답변서에 나타난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2. 2. 24.까지의 원리금은 합계 639,824,657원[= 원금 350,000,000원 + 2019. 1. 21.까지의 이자 30,000,000원 + 2019. 1. 22.부터 2022. 2. 24.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59,824,657원]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2022. 2. 21.까지의 이자만 계산하여 그 원리금을 639,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또한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B에 대한 채권금액을 639,000,000원으로 인정한다.

2) 피고가 2023. 3. 23.자 준비서면에서 인정하는 채무이다(위 준비서면 제2면 제19행).